

결과논변과 수반논변*†

홍 지 호

【요약문】 이 논문에서 나는 자유론 입장에 대한 터너의 비판에 대해 고찰한다. 그에 따르면, '결과논변'을 포기하지 않는 한, 자유론은 자연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그는 이러한 주장을 위해 '수반논변'을 제시하는데, 그에 따르면, '수반논변'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결과논변'을 포기하거나 자연주의를 포기해야 한다. 그러나 나는 자유론 입장에서 '결과논변'을 고수한다 하더라도 그의 '수반논변'을 수용할 필요는 없다는 것과 그의 '수반논변'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행위자의 자유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보인다. 이러한 이유들로 나는 자유론 입장에 대한 터너의 비판은 실패한다고 결론짓는다.

【주요어】 자유론, 자연주의, 결과논변, 수반, 수반논변, 터너

* 접수완료: 2010. 7. 19. 심사 및 수정완료: 2010. 8. 2. 게재 확정일: 2010. 8. 10

† 이 논문의 초고를 심사하시면서, 중요한 지적과 더불어 앞으로의 연구에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1. 도입

행위자의 자유와 인과적 결정론의 양립가능성 문제와 관련하여 양자가 양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상 양립불가론(*incompatibilism*)이라 부른다. 이 입장은 크게 보아 둘로 나뉠 수 있는데, 하나는 인과적 결정론을 받아들이면서 행위자의 자유를 부정하는 입장이다. 이 입장은 통상 강한 결정론(*hard determinism*)이라 불린다. 다른 하나는, 인과적 결정론을 포기하고 비결정론을 수용하면서 행위자의 자유를 확보하려고 시도하는 입장이다. 이 입장에 대한 중요한 반론 중의 하나는, 이 입장이 자연주의(*naturalism*)나 물리주의(*physicalism*)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근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비결정론을 받아들이면 행위자가 가지는 통제력을 해명할 수 없다. 행위자의 선택이나 행위는 우연의 산물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행위자의 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위자 원인(*agent causes*)과 같은 요소를 도입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요소는 자연주의나 물리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과 관련하여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두 가지라 할 수 있다. 하나는 비결정론만으로는 행위자의 자유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자연주의나 물리주의에서 벗어나는 요소 즉, 행위자 원인과 같은 것을 도입하는 입장이다. 통상 이러한 입장은 행위자 원인론(*theory of agent causation*)이라 불린다.¹⁾ 다른 하나는, 자연주의나 물리주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비결정론만으로도 행위자의 자유를 적절하게 해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려는 입장이다. 통상 이러한 입장은 자유론(*libertarianism*)이라 불린다.²⁾ 최근 터너(J.

1) 이 입장의 대표자로 오코너(T. O'Connor)를 들 수 있다. O'Connor(2000) 참조.

2) 이 입장의 대표자로 케인(R. Kane)을 들 수 있다. 사실상 자유론의 입장은 자연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 전통적으로 지배적인 견해라 할 수 있

Turner)는 이러한 후자의 입장 즉 자연주의 틀 안에서 비결정론만을 가지고 행위자의 자유를 해명하려 하는 자유론의 입장에 대해 새로운 반론을 제기하였다.³⁾ 그는 자유론의 입장이 대개 ‘결과논변(consequence argument)’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런 다음, 그는 ‘결과논변’과 유사한 논변을 제시하면서, 자연주의를 고수하는 자유론의 입장에서 ‘결과논변’을 받아들일 경우 그 논변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그 논변을 ‘수반논변(supervenience argument)’이라 부르는데,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행위자의 자유를 부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⁴⁾ 결국, 행위자의 자유를 위해서는 ‘수반논변’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미시거시 수반(micro-macro supervenience)을 부정함으로써 자연주의를 포기하거나 ‘결과논변’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터너의 주장이다. 이 주장이 적절한 것이라면 자유론은 매우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다. ‘결과논변’을 포기하지 않는 한, 자유론의 입장은 자연주의와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이 글의 목적은 바로 이러한 터너의 주장에 대해 비판적으로

다. 그 핵심적인 이유는 비결정론이 보장해 주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우연일 뿐이고 그 우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연주의에서 벗어나는 요소가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케인은 이러한 전통적인 입장에 반대하면서 자유론과 자연주의가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 글을 통해 논의하게 될 자유론은 바로 이러한 ‘자연주의적 자유론’이라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 Kane(1996), Kane(1999) 참조.

3) Turner(2009), pp. 565-587.

4) ‘수반논변’이라는 용어에 대한 오해를 제거하기 위해 미리 밝혀둘 것이 있다. 이 글에서 논의될 몇 가지 형태의 ‘수반논변’은 잘 알려져 있는 김재권의 ‘수반논변’과 다르다. 김재권의 ‘수반논변’은 물리주의를 수용할 경우 정신인과의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환원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구성되는 것이다. 반면에, 이 글에서 논의하게 될 몇 가지 형태의 ‘수반논변’은 미시거시 수반 내지 심신수반을 받아들일 경우 행위자의 자유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이려는 의도로 구성되는 것이다. 김재권의 ‘수반논변’에 대해서는 Kim(2005) pp. 39-69 참조.

검토하면서 ‘결과논변’을 받아들이는 자유론의 입장이 자연주의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먼저 인과적 결정론과 ‘결과논변’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2장). 이 과정에서 ‘결과논변’을 수용할 경우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 정리할 것이다. 이것은 ‘터너의 수반논변(앞으로 TSA로 약칭할 것임)’과 ‘결과논변’을 비교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런 다음, TSA에 근거한 터너의 결론적 주장 즉 ‘결과논변’을 포기하지 않는 한 자유론은 자연주의와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할 것이다(3장). 이를 통해 그의 주장은 그리 신통치 않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그 이유를 미리 밝히면, ‘결과논변’을 수용하는 자유론의 입장에서 TSA를 건전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행위자의 자유를 포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터너의 ‘수정된 TSA’에 대해서 검토해 볼 것이다(4장). 이 과정에서 ‘결과논변’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수정된 TSA’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고, 결국 자유론에 대한 터너의 공격은 실패한다고 결론짓게 될 것이다.

2. 인과적 결정론과 ‘결과논변’

인과적 결정론을 정의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의에 따라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인과적 결정론: 모든 사건은 선행하는 원인들과 자연법칙들에 의해 필연적으로 결정된다는 견해.⁵⁾

5) 이 정의는 Kane(2002)에 따른 것이지만, 행위자의 자유와 관련한 논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피셔(J. M. Fischer)도 인과적 결정론이란, “임의의 특정 시각에 있어 그 시각에 관한 사실들의 완전한 진

이러한 정의는 가장 일반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결정론이란 자연법칙이, 임의의 순간에 세계의 상태를 정확히 기술하는 임의의 명제와 연합될 때, 임의의 다른 참된 명제를 함축한다는 테제이다.”⁶⁾라는 터너의 입장에도 일치한다. ‘결과논변’이란 바로 이러한 인과적 결정론이 참일 경우 행위자의 자유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거짓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결과논변’이 제시되었지만⁷⁾, 그것들은 모두 다음과 같은 반 인웨건(P. van Inwagen)의 ‘비형식적 결과논변’을 명료하게 드러내려는 작업의 결과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만일 결정론이 참이라면, 우리의 행위는 자연법칙들과 먼 과거의 사건들의 결과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다. 그리고 자연법칙이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의 결과들(우리의 현재 행동들을 포함하여)은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다.⁸⁾

이제 우리는 인과적 결정론과 행위자의 자유에 대한 믿음이 상충하는 이유에 대해 가능해 볼 수 있다. 어떤 행위가 자유로운 것이기 위해서는 그 행위를 행하는 행위자가 그 행위에 대해 통제력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인과적 결정론이 참일 경우, 우리의 행위

술은 자연법칙에 대한 완전한 진술과 더불어서 그 시각 이후에 발생하는 것에 대한 낱말의 진리를 함축한다는 테제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인과적 결정론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설명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이 글이나 터너가 사용하는 정의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다. Kane(2002), p. 284, Fischer(1994), p. 9 참조.

⁶⁾ Turner(2009), p. 565.

⁷⁾ ‘결과논변’ 또는 그와 유사한 형태의 논변들은 van Inwagen(1983), p. 70 및 van Inwagen(1995), p. 224, Fischer(1994), p. 8, Kane(1996), p. 45, Warfield(1999), pp. 97-8, O'Connor(2000), p. 6 등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⁸⁾ van Inwagen(1983), p. 16 및 p. 56.

는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다.’ 즉, 우리의 통제 하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의 통제 하에 있지 않은 행위를 자유로운 것이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인과적 결정론과 우리의 자유는 상충하는 것이다. 이제 앞으로의 논의를 위해 위와 같은 ‘비형식적 결과논변’을 형식화한 다음의 ‘결과논변’을 살펴보자.⁹⁾

<결과논변>

(1) $\Box((L\&P)\rightarrow F)$

(2) $N(L\&P)$

따라서 (3) NF

이 논변의 (1)은 인과적 결정론에 의해 성립하는 것으로서 \Box 는 논리적 필연성 기호이고, L 은 자연법칙들의 연접이고, P 는 과거의 특정 시각에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기술구이고, F 는 P 가 발생한 시각 이후의 특정 시각에 발생한 어떤 행위자의 행위에 대한 기술구이다. 결국 (1)은 자연법칙들과 과거 사건들에 대한 기술구의 연접이 특정 시각에 발생하는 어떤 행위자의 행위를 필연적으로 함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인과적 결정론을 수용할 경우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명제이다. (2)의 N 은 주어진 명제를 거짓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기호이다. 그래서 NX 는 어느 누구도 X 를 거짓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달리 말하면, 어느 누구도 X 가 기술하는 사건에 대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N(L\&P)$ 는 어느 누구도 자연법칙들과 과거 사건들에 대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1)과 (2)로부터 귀결되는 결론인 (3)에 나오는 NF 는 어느 누구도 F 에 대해 선택의 여지가

⁹⁾ 이러한 형태의 ‘결과논변’은 Warfield(1999)의 것으로서 터너도 이러한 형태의 ‘결과논변’을 가지고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Warfield(1999), pp. 97-8 참조.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달리 말하여, P가 발생한 시각 이후의 특정 시각에 발생한 어떤 행위자의 행위에 대해 어느 누구도(따라서 그 행위를 행하는 행위자 자신조차도) 그 행위의 발생에 대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논변’이 보여주는 것은 물론 인과적 결정론과 행위자의 자유는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논변의 설득력이 클수록 양립불가론도 더 큰 설득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 논변은 양립가능론의 입장에서는 극복해야 할 것이지만, 양립불가론의 입장을 취하는 자유론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이론적 출발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¹⁰⁾ 그런데 이 논변을 건전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해야 한다. 이제 그것들이 무엇인지 간략히 정리해 보자.

먼저 β 규칙이라 불리는 추론 규칙을 타당한 것으로 전제해야 한다. β 규칙이란, $\Box(X \rightarrow Y)$ 와 NX 로부터 NY 로 나아가는 것을 허용해 주는 규칙이다. 예를 들어, X 를 ‘내 두뇌의 C-신경섬유의 떨림’이라고 하고 Y 를 ‘내가 고통을 느낌’이라 해보자. 그렇다면 $\Box(X \rightarrow Y)$ 는 내 두뇌의 C-신경섬유가 떨리면 내가 고통을 느끼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NX 는 내 두뇌의 C-신경섬유가 떨리는 데 대해 나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두 전제에 β 규칙을 적용하면, NY 즉 내가 고통을 느끼는 것에 대해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도출된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β 규칙이 타당하지 않다면, 위와 같은 ‘결

¹⁰⁾ ‘결과논변’을 옹호하는 것으로 행위자의 자유가 해명되는 것은 아니다. 자유론의 입장에서 보면, ‘결과논변’은 비결정론을 통해 자유를 해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논변일 뿐이다. ‘결과논변’은 자유론의 입장뿐만 아니라 행위자 원인론의 입장을 위한 출발점이기도 하다. 실제로 행위자 원인론자인 오코너도 ‘결과논변’을 설득력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양립불가론의 입장을 지지한 다음, 자신의 이론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O'Connor(2000) pp. 2-22 참조.

과논변'은 타당한 것으로 성립할 수 없다.¹¹⁾

이제 두 번째 전제인 N(L&P)에 대해 생각해 보자. 앞서 언급했듯이, 이 명제는 어느 누구도 자연법칙들과 과거 사건들에 대한 기술구의 연접을 거짓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전제를 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자연법칙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과 이미 발생한 과거 사건들에 대한 참된 기술구를 거짓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항들은 각각 '법칙 고정성 전제'와 '과거 고정성 전제'로 불린다. 이제 '결과논변'을 건전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 β 규칙
- 법칙 고정성 전제
- 과거 고정성 전제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결과논변'의 (1)은 인과적 결정론을 수용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2)는 법칙 고정성 전제와 과거 고정성 전제를 수용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1)과 (2)로부터 (3)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β 규칙을 타당한 것으로 수용함으로써

11) 사실 '결과논변'의 타당성을 보증해 주는 β 규칙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애초에 van Inwagen(1983)이나 van Inwagen(1995)에 제시된 형태의 '결과논변'에는 α 규칙과 β 규칙이 적용된다. 반 인웨건의 '결과논변'에서 α 규칙이란 $\Box X$ 에서 NX 를 도출하는 것을 허용해 주는 것이고, β 규칙이란 $N(X \rightarrow Y)$ 와 NX 로부터 NY 를 도출하는 것을 허용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 글에서 논의하고 있는 β 규칙은 반 인웨건의 α 규칙과 β 규칙을 합쳐놓은 형태라 할 수 있다. 터너는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β 규칙을 $\Box\beta$ 규칙이라 칭하고 있다. 이러한 β 규칙과 관련된 자세한 논의는 이 글의 목적상 불필요하다. 앞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글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려 하는 터너의 주장은 '결과논변'이 건전하다는 것을 전제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써 성립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β 규칙과 두 전제들의 수용 가능성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결과논변’을 건전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결과논변’은 인과적 결정론이 행위자의 자유를 위협하는 이유에 대해 잘 보여주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인과적 결정론이 참일 경우 우리는 자연법칙과 과거 사건에 의해 필연적으로 결정된 것만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인과적 결정론이 참일 경우 행위자에게는 대안적 행위의 가능성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행위가 자유로운 것이기 위해서는 그 행위를 행하는 행위자가 그 행위와는 다른 행위를 행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 참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도서관에서 터너의 논문을 읽고 있다고 해보자. 이러한 나의 행위가 자유로운 것이라면, 내가 지금 도서관에서 터너의 논문을 읽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행하고 있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 참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로 대안적 행위의 가능성은 행위자의 자유를 위한 필요조건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런데 인과적 결정론이 참이라면 그러한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과적 결정론이 참인 세계에서는 내가 지금 도서관에서 터너의 논문을 읽고 있는 행위는 자연법칙들과 과거 사건들에 의해 필연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자유론 입장에서는 비결정론을 통해 행위자의 자유를 확보하려고 한다. 그런데 터너는 이렇게 ‘결과논변’에서 출발하여 행위자의 자유를 해명하려는 자유론의 입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다. 이제 그 반론이 무엇인지 살펴볼 차례다.

3. 터너의 ‘수반논변’

앞서 논의한 것처럼, 자유론에 대한 터너의 비판은 기본적으로

자유론의 입장이 ‘결과논변’을 건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과 자연주의 틀 안에서 행위자의 자유를 해명하려 한다는 것에서 성립한다. 여기서 자연주의란 자연과학 중에서도 특히 물리학을 세계에 관한 근본적 이론으로 간주하면서 미시거시 수반을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¹²⁾ 미시거시 수반이 성립한다는 것은, 모든 사건과 인과관계가 미시 물리적 사건들에 수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글의 논의와 관련하여 자연주의 입장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모든 사건은 미시 물리적 사건에 의존한다는 것과, 미시 물리적 사건이 변화하지 않는 한 그것에 수반하는 거시 사건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터너에 따르면, 미시거시 수반을 포함하는 자연주의 틀 안에서 ‘결과논변’을 건전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와 유사한 논변 즉 TSA(터너의 ‘수반논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TSA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행위자의 자유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행위자의 자유를 긍정하기 위해서는 TSA를 거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결과논변’을 포기하거나, 미시거시 수반을 포기함으로써 자연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러한 터너의 주장이 옳을 경우, 자유론의 입장은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결과논변’을 포기하지 않는 한, 자연주의와 조화를 이룰 수 없게 되기

12) 물론 자연주의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그러나 그러한 다양한 정의들에 대해 다루는 것은 이 글의 논의를 위해 그다지 필요치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논의하려 하는 터너도 이러한 의미의 자연주의를 통해 자유론과 자연주의가 양립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자연주의 체계는 궁극적으로 모든 것의 핵심은 근본적인 물리학이라는 주장이다. ... 무엇이 무엇에 의존하는지에 관한 체계이다. 즉, 모든 사건과 인과관계는 근본적인 물리적 수준에서 발생하는 것에 의존하고 따라서 수반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되는 자연주의는 아주 강한 것으로서 물리적 세계가 인과적으로 폐쇄되어 있다는 원리를 덧붙이면 물리주의와 동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Turner(2009), p. 568.

때문이다. 앞으로의 논의를 위해 이러한 터너의 비판을 논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유론에 대한 터너의 비판>(앞으로 TCL로 약칭할 것임)

P1. ‘결과논변’을 받아들이면, TSA를 받아들여야 한다.

P2. TSA를 받아들이면, 행위자의 자유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P3. 행위자의 자유를 긍정해야 한다.

C1. ‘결과논변’을 거부하거나, TSA를 거부해야 한다.

P4. TSA를 거부한다면, 자연주의를 포기하게 된다.

C2. ‘결과논변’을 거부하거나, 자연주의를 포기해야 한다.

이 논변이 건전하다면, ‘결과논변’을 수용하는 자유론은 자연주의와 조화를 이루기 힘들다 할 수 있다. C2에서 볼 수 있듯이, 자유론의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과논변’을 거부하거나 자연주의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유론의 입장에서는 어느 쪽의 선택도 달가운 것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자유론의 입장에서 이 비판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일단 P3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 P3를 부정하게 되면 더 이상 자유론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자유론의 입장에서는 P1, P2, P4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부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가능한지 따져보기 위해서는 먼저 TSA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이제 터너가 제시하는 ‘비형식적 수반논변’을 통해 TSA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보자.

약한 자연주의가 참이라면, 우리의 행위들은 자연법칙들과 먼 과거의 사건들과 비결정론적인 미시 물리적 사건들의 결과들로부터 귀결되는 것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발생했던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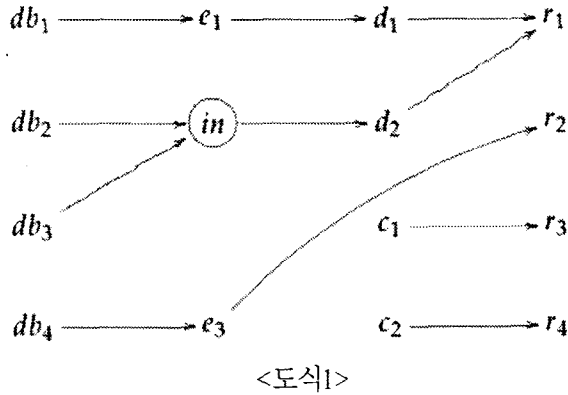
들이 무엇인지나 자연법칙들이 무엇인지나 비결정론적 미시 물리적 사건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로부터 귀결되는 것들은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다.[밑줄 친 부분은 필자의 강조]¹³⁾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듯이, 이러한 ‘비형식적 수반논변’은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반 인웨건의 ‘비형식적 결과논변’과 매우 유사하다. 물론 몇 가지 차이점도 있다. 그 중 하나는 ‘결정론’이라는 용어대신 ‘약한 자연주의’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약한 자연주의’라는 말로 터너가 의미하는 것은, 강수반이 아니라 약수반을 받아들이는 자연주의 입장이다.¹⁴⁾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차이점은 바로 ‘비결정론적인 미시 물리적 사건들’이라는 구절이 새롭게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비결정론적인 미시 물리적 사건들이란 거시 사건의 수반기초라 할 수 있다. 반 인웨건의 ‘비형식적 결과논변’과 비교해 볼 때, ‘비형식적 수반논변’에는 우리가 그러한 수반기초에 대해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셈이다. 이제 터너가 ‘비형식적 수반논변’을 형식화하는 과정을 따라가 보자. 그는 다음과 같은 도식을 염두에 두고 형식화를 시도하고 있다.¹⁵⁾

¹³⁾ Turner(2009), p. 570.

¹⁴⁾ 간단히 정리하면, 약수반이 성립한다는 것은 임의의 가능세계에서 수반이 성립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강수반이 성립한다는 것은 모든 가능세계를 관통하여 수반이 성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을 염두에 두면, 강수반을 받아들이는 강한 자연주의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비형식적 수반논변’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강수반과 약수반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이 글의 목적상 필요치 않다.

¹⁵⁾ 이 도식 및 이 도식에 대한 해설은 Turner(2009), pp. 573-5 참조. 미리 밝히면, 이 글에서 논의하게 될 <도식1>과 <도식2>는 각각 터너의 <도식2>와 <도식3>에 해당하는 것이다. 터너의 <도식1>은 비결정론적 사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본적인 것으로서 여기서는 논의를 간소화하기 위해 생략한다.



터너에 따르면, 이 도식에서 화살표는 인과관계를 의미한다. 인과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알파벳들은 모두 어떤 행위자에게 발생하는 미시 물리적 사건들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 $db_1 \sim db_4$ 는 어떤 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정신사건의 수반기초들을 의미한다. $r_1 \sim r_4$ 는 그 행위자가 행하는 행위의 수반기초를 의미한다. $e_1, in, e_3, c_1 \sim c_2$ 와 $d_1 \sim d_2$ 는 $db_1 \sim db_4$ 와 $r_1 \sim r_4$ 사이에 성립하는 인과연쇄에 포함되어 있는 미시 사건들을 의미한다. e_1, in, e_3 는 $db_1 \sim db_4$ 에 의해 야기되어 r_1 와 r_2 를 야기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c_1 \sim c_2$ 는 $db_1 \sim db_4$ 에 의해 야기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다른 것에 의해 야기되어 행위자의 행위의 수반기초에 포함되어 있는 r_3 와 r_4 를 야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in 은 비결정론적 사건을 의미한다. 터너는 이러한 도식을 염두에 두고 DB를 수반기초인 $db_1 \sim db_4$ 에 대한 기술구로, IN을 비결정론적 사건 in 에 대한 기술구로, L을 자연법칙에 대한 기술구로, R_1, R_2, R_3, R_4 를 각각 r_1, r_2, r_3, r_4 에 대한 기술구로 간주하면서 다음과 같은 명제가 참이라고 주장한다.

$$(1) \quad \square((DB \& C \& IN \& L) \rightarrow (L \& R_1 \& R_2 \& R_3 \& R_4))$$

일단 위와 같은 도식을 반영하고 있는 이 조건명제와 ‘결과논변’의 (1)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간단하게 비교하고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첫 번째 공통점은 양자 모두 전건이 후건을 필연적으로 함축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 공통점은,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데, 전건에 포함되어 있는 사건들과 후건에 포함되어 있는 사건들 사이에는 시간적인 선후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물론 차이점도 있다. 그것은 바로 ‘결과논변’의 (1)과는 달리 여기에는 IN 즉 비결정론적 사건에 대한 기술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 조건 명제는 미시 사건에 대한 기술구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도 ‘결과논변’의 (1)과 다르다.

이제 터너에 따라 논의를 더 진행해 보자. 우리가 미시 사건들에 수반하는 거시 사건들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수반기초인 $r_1 \sim r_4$ 에 수반하는 어떤 행위 r 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한 기술구를 R 로 정하면, 다음과 같은 조건명제를 받아들여야 한다.

$$(2) \quad \square((L \& R_1 \& R_2 \& R_3 \& R_4) \rightarrow R)$$

우리가 이 명제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1)과는 달리 전건에 포함되어 있는 사건들과 후건의 사건 사이에는 시간적 선후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명제는 미시거시 수반을 받아들임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건의 미시 사건들과 후건의 거시 사건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제 (1)과 (2)로부터 다음과 같은 명제가 논리적으로 도출된다.

$$(3) \quad \square((DB \& C \& IN \& L) \rightarrow R)$$

TSA는 바로 이러한 (3)을 전제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TSA>

(3) $\square((DB\&C\&IN\&L)\rightarrow R)$

(4) $N(DB\&C\&IN\&L)$

따라서 (5) NR

이렇게 (3)과 (4)로부터 (5)가 도출된다는 것이 ‘터너의 수반논변 (TSA)’이다. 본격적인 논의의 출발점에서 우리가 정리했던 TCL의 첫 번째 전제 P1은 바로 ‘결과논변’을 건전한 것으로 받아들일 경우, TSA도 건전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제 과연 이와 같은 터너의 주장이 옳은지 따져보도록 하자.

언뜻 보기에, 비결정론을 수용하는 자유론의 입장에서는 TSA의 첫 번째 전제인 (3)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조금 전에 주목했듯이, ‘결과논변’의 경우와는 달리 이 논변의 (3)의 전건에 비결정론적 미시 사건에 대한 기술구 IN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은 전건이 후건을 필연적으로 함축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비결정론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비결정론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3)은 미시적 차원의 비결정론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 물론 IN이 비결정론적 미시 사건에 대한 기술구인 이상 그것의 진리 여부 즉 in의 발생 여부는 그 이전에 발생한 사건들에 의해 결정론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미 발생한 in이 여타의 사건들과 더불어 r을 결정론적으로 야기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은 비결정론을 수용하는 자유론의 입장과 양립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유론의 입장에서도 (3)을 거부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4)는 어떨까? (4)에는 r 이전에 발생한 사건들, 말하자면 과거 사건들에 대한 기술구와 자연법칙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4)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보인다. ‘결과논변’을 받아들이는 자유론의 입장에서는 과거 고정성 전제와 법칙 고정성 전제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TSA와 ‘결과논변’은 형식적인 차원에서도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결과논변’과 마찬가지로 TSA에도 β 규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결과논변’을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유론의 입장에서는 TSA도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결국 자유론의 입장에서는 TCL의 첫 번째 전제 P1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듯이 보인다. 그렇다면, 자유론 입장에서 남은 선택지는 P2와 P4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부정하는 길뿐이다.

이제 이렇게 물음을 던지며 논의를 시작해 보자. TSA를 받아들이면, 행위자의 자유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가? 만일 이 물음에 ‘그렇다’고 답변할 수밖에 없다면, 자유론의 입장은 궁지에 몰리게 되는 셈이다. 물론 아직 P4에 대한 논의는 남아 있지만 말이다. 그러나 TSA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자유론 입장에서 행위자의 자유를 포기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왜 그런지 알아보기 위해 TSA의 첫 번째 전제를 다시 한 번 살펴보자.

(3) $\square((DB\&C\&IN\&L)\rightarrow R)$

터너는 비결정론을 수용해도 이러한 조건명제는 성립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옳은 생각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IN이 조건명제의 전건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3)과 ‘결과논변’의 첫 번째 전제와의 공통점 중의 하나는 전건에 기술된 사건들과 후건에 기술된 사건 사이에 시간적 선후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IN이 기술하고 있는 비결정론적 사건 in은 후건의 R이 기술하고 있는 행위자의 행위 r의 시점에서 보았을 때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논변’에서 과거 고정성 전제를 받아들임으로써 두 번째 전제에 포함되어 있는 NP를 받아들였듯이, TSA의 두 번째 전제인 (4) N(DB&C&IN&L)에 포함되어 있는 NIN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IN이 비결정론적 사건에 대한 기술구임에도 말이다. 그러나 만일 IN이 조건명제의 전건이 아니라 후건에 위치해 있다면, 자유론의 입장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도식1>을 참조하여 IN을 ‘행위 r을 행하기로 결단함’이라는 정신사건의 수반기초를 구성하는 미시 사건에 대한 기술구라고 해보자. 그리고 그러한 결정에 앞서 있을 숙고의 과정을 이루는 수반기초 중에 db₂와 db₃가 in의 원인적 역할을 했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명제가 성립할 수 있다.

$$(6) \sim \square((DB_2 \& DB_3 \& L) \rightarrow IN)$$

이 명제는 자유론의 입장을 비판하는 터너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터너가 이 명제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한다면, 자유론의 입장이 비결정론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명제는 <도식1>과 상충하지도 않고, TSA와도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자유론의 입장에서 TSA를 건전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하더라도 (6)과 같은 명제가 성립한다고 여전히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6)이 성립한다는 것은 자유론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자유론이란 바로 이러한 종류의 명제에 기대어 행위자의 자유를 해명하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r을 ‘내가 터너의 논문을 읽기 위해 도서관에 감’이라는 사건이라 해보자. 이 경우 TSA의 NR을 참으로 수용하는 것

은 내가 터너의 논문을 읽기 위해 도서관에 가는 행위를 하는 데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 듯이 보인다. 그러나 자유론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행위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지만, 그렇게 결단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물론 (6)에 근거해서 말이다. in을 ‘내가 터너의 논문을 읽기 위해 도서관에 가기로 결단함’이라는 정신사건의 수반 기초를 구성하는 미시 사건이라고 한다면, (6)이 의미하는 것은 그러한 결단의 발생을 위한 미시 사건이 비결정론적이라는 것이다. 결국 (6)은 그러한 결단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유론의 입장에서는 (3)이 성립하더라도 (6)을 통해 행위자가 여전히 자기 행위의 결단에 대해 선택의 여지를 가진다고 주장할 수 있다. 물론 자유론 입장에서는 (6)이 행위자의 자유를 보장해 준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논변할 의무는 있다. (6)이 보장해 주는 것은 단순한 우연성이지 행위자의 자유는 아니라는 반론이 있기 때문이다.¹⁶⁾ 그러나 지금 우리의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TSA와 (6)이 양립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TSA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행위자의 자유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터너는 ‘결과논변’을 받아들이는 자유론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논변을 만드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논변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자유론의 입장은 아무런 타격도 입지 않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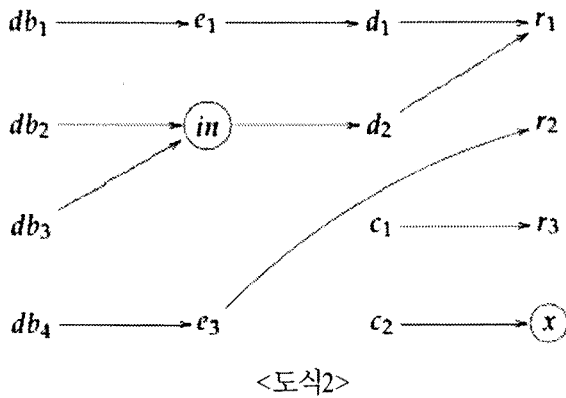
그러나 아직 TSA를 통한 터너의 공격이 실패한다고 단정할 수

¹⁶⁾ 케인에 따르면, 이러한 반론은 ‘행운원리(luck principle)’를 건전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성립하는 것이다. ‘행운원리’란 다음과 같다. “만일 어떤 행위가 시각 t 에 비결정론적이라면, 그것이 시각 t 에 발생할지 발생하지 않을지의 여부는 우연이나 행운의 문제일 것이다. 그래서 그 행위는 자유로운 그리고 책임 있는 행위일 수 없다.” 자유론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행운원리’를 설득력 있게 부정해야만 한다. ‘행운원리’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 글의 목적상 생략한다. Kane(1999), p. 217 참조.

는 없다. 그는 방금 살펴본 반론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정된 TSA’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의 대응을 살펴보고 그것이 적절한 것인지 따져볼 차례다.

4. 터너의 ‘수정된 수반논변’

앞서 논의한 것처럼, TSA를 건전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해도 자유론의 입장은 별다른 타격을 입지 않는다. 그 이유는, 자유론의 입장에서 중요한 명제인 (6)~□((DB₂&DB₃&L)→IN)이 TSA와 양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터너가 이러한 반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결정론적 사건이 조건명제의 후건에 등장하는 경우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터너는 그러한 경우에 대응하는 논변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 그의 대응을 살펴보고 그것이 적절한 것인지 따져보기로 하자. 그는 (6)에서처럼 비결정론적 사건이 조건명제의 후건에 포함되는 경우를 다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도식을 제시한다.¹⁷⁾



¹⁷⁾ Turner(2009), p. 576.

앞서의 <도식1>과 비교해 볼 때, 달라진 것은 바로 r_4 가 x 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터너가 x 를 가지고 의미하는 것은 비결정론적 사건이다. 즉, x 는 c_2 에 의해 결정론적으로 야기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식2>는 행위자의 행위 r 의 수반기초를 이루는 미시 사건들 중에 비결정론적 사건이 포함되는 경우를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미시거시 수반을 받아들인다면 $r_1 \& r_2 \& r_3 \& x$ 에 의해 수반되는 거시 사건인 행위자의 행위 r 도 비결정론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도식2>가 표현하는 사건 과정에서는 TSA의 첫 번째 전제인 (3) $\square((DB \& C \& IN \& L) \rightarrow R)$ 는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TSA는 성립하지 않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터너는 다음과 같은 ‘수정된 TSA’를 제시하면서, 자유론의 입장에서 이 논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¹⁸⁾

<수정된 TSA>

(7) $\square((DB \& C \& IN \& L \& X) \rightarrow (L \& R_1 \& R_2 \& R_3 \& X))$

(8) $N(DB \& C \& IN \& L \& X)$

따라서 (9) $N(L \& R_1 \& R_2 \& R_3 \& X)$

(10) $\square((L \& R_1 \& R_2 \& R_3 \& X) \rightarrow R)$

따라서 (11) NR

이 논변은 앞서 살펴본 TSA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자유론의 입장을 비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먼저 형식적인 차원에서 (7)과 (8)로부터 (9)가 도출되는 것과 (9)와 (10)으로부터 (11)이 도출되는 것은 ‘결과논변’의 경우처럼 β 규칙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형식적인 차원에서 ‘결과논변’을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수정된 TSA’도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¹⁸⁾ Turner(2009), p. 576.

그렇다면, ‘수정된 TSA’가 자유론의 입장을 비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각각의 명제들을 수용할 수 있을지 따져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다. 그것은 바로 (9), (10), (11)은 하나의 독립적인 논변인데,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메릭스(T. Merricks)가 ‘자유의지에 대한 아래로부터 위로의 위협’이라 부르는 다음의 논변을 살펴보자.¹⁹⁾

- (I) 인간은 다음이 진리라는 데에 어떠한 선택의 여지도 없다. 인간 행위자가 수행하는 모든 행위는 그 행위자의 구성 원자들이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그 구성 원자들이 무엇과 같은지에 수반한다.
 (II) 인간은 자신의 구성 원자들이 무엇을 행할지 또는 그 구성 원자들이 무엇과 같은지에 관해 어떠한 선택도 할 수 없다.
 따라서 (III) 인간은 자신이 수행하는 행위가 무엇인지에 관해 어떠한 선택도 할 수 없다.

이러한 메릭스의 논변에서 전제 (I)은 ‘수정된 TSA’의 (10)에, 전제 (II)는 (9)에, 결론인 (III)은 (11)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²⁰⁾ 이러한 생각에 기초하여 메릭스의 논변을 다음과 같이 형식화하고, 그것을 ‘메릭스의 수반논변’(앞으로 MSA로 약칭할 것임)이라 해보자.

<MSA>

(9) $N(L \& R_1 \& R_2 \& R_3 \& X)$

¹⁹⁾ Merricks(2001), p. 156.

²⁰⁾ 사실 ‘수정된 TSA’의 (10)과 메릭스가 제시하는 논변의 (I)에는 차이점이 있다. (10)은 $\square((L \& R_1 \& R_2 \& R_3 \& X) \rightarrow R)$ 이지만, (I)을 정확히 형식화하면, $N((L \& R_1 \& R_2 \& R_3 \& X) \rightarrow R)$ 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square Y$ 로부터 NY 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이러한 차이점은 우리의 논의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에 대해 터너도 동의할 것이다.

(10) $\Box((L \& R_1 \& R_2 \& R_3 \& X) \rightarrow R)$

따라서 (11) NR

이 논변에서 (10)은 미시거시 수반을 받아들이는 자유론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9)는 어느 누구도 미시 물리적 사건에 대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명제와 어느 누구도 자연법칙에 대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명제로 이루어져 있다. MSA는 자유론의 입장이 자연주의의 틀 안에서 미시거시 수반을 받아들였을 때 행위자의 자유를 확보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논변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 논변을 건전한 것으로 받아들일 경우 통시적 차원에서 비결정론적 사건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행위자의 자유를 위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왜 그런지 생각해 보기 위해 김재권이 ‘에즈워드의 언명’이라 부르는 것을 살펴보자.²¹⁾

에즈워드의 언명: ‘수직적’ 결정과 ‘수평적’ 인과 사이에는 긴장이 있다. 실제로 수직적 결정은 수평적 인과를 배제한다.

우리의 논의와 관련하여 ‘수직적’ 결정은 미시거시 수반에 의한 것으로, ‘수평적’ 인과는 인과적 결정론에 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리고 양자 사이에 긴장은 양자의 공통점 즉 ‘결정’에서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²²⁾ 예를 들어, 현재 어떤 행위자의 임의의 행

21) 김재권은 이러한 ‘에즈워드의 언명’으로부터 환원주의를 옹호하기 위한 ‘수반논변’을 구성하는 데로 나아간다. Kim(1998) 및 Kim(2005) 참조.

22) 김재권도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개의 결정 관계들을 갖는데 이것들은 서로 직교한다. 하나는 수직적인 미시-거시적 및 부분-전체적(mereological) 결정과 다른 하나는 수평적인 과거에서 미래로의 인과적 결정이다.” Kim(2005), p. 36 참조.

위 F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인과적 결정론을 받아들이면, 그 행위는 과거 사건들과 자연법칙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명제가 성립한다.

$$(12) \quad \Box((L\&P)\rightarrow F)$$

이 명제는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보았던 ‘결과논변’의 첫 번째 전제였다. 그런데 ‘수직적’ 결정도 이러한 명제로 표현될 수 있다. 조금 전에 예로 들었던 임의의 행위 F는 거시적인 사건으로서 수반기초를 가진다. 말하자면, 그것은 F와 동시에 발생하는 미시 물리적 사건들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을 Q라고 해보자.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명제가 성립한다.

$$(13) \quad \Box((L\&Q)\rightarrow F)$$

결국 F를 필연적으로 함축하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 셈이다. 하나는 F 이전에 발생한 과거 사건들 P이고 다른 하나는 F와 동시에 발생하는 F의 수반기초이다. 그렇다면, (12)가 성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즉, $\sim\Box((L\&P)\rightarrow F)$ 와 같은 명제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미시거시 수반을 통해 (13)을 받아들인다면, 행위자의 자유를 위협하는 논변을 구성해 볼 수 있다.²³⁾ 그것이 바로 앞서 살펴본 MSA이다.

23) 이러한 생각은 피츠(S. Goetz)에게서도 엿볼 수 있다. 그에 따르면, “... 요즘 자연주의자들에게 인기 있는, [인과적 결정론과는] 다른 종류의 결정론이 있다. 현대적인, 고전적이지 않은 자연주의자들에 따르면, 고전적인 과거에서 현재로의 인과적 결정론이 거짓이고 물리적인 것이 (양자 역학에 대한 어떤 해석들이 주장하듯) 궁극적으로 비결정론적이라 할지라도, 결정론이 참이라고 믿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고 적절하다. 왜냐하면, 실재는 특징적인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단계적인 것들의 다층적 층위라는 일반적인 존재론적 테제를 믿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다. 요즘의 자연주의자들은 미시 물리

이제 MSA를 포함하고 있는 ‘수정된 TSA’로 돌아가 보자. ‘수정된 TSA’의 (7), (8)은 MSA의 중요 전제인 (9)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일 터너의 주장처럼, ‘결과논변’을 수용할 경우 ‘수정된 TSA’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 자유론의 입장은 MSA라는 강력한 논변과 만나게 되는 셈이다. 이제 우리의 물음은 이렇다. ‘결과논변’을 받아들일 경우, ‘수정된 TSA’의 (7), (8)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까? 먼저 (7)부터 다시 살펴보면서 자유론의 입장에서 그것을 거부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

$$(7) \quad \square((DB\&C\&IN\&L\&X)\rightarrow(L\&R_1\&R_2\&R_3\&X))$$

여기서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7)의 후건에 비결정론적 사건 x 에 대한 기술구 X 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필연적 함축이 성립하지 않으리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필연적 함축이 성립하고 있다. 그 이유는 X 가 전건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터너는 비결정론적 사건 x 에 대한 기술구 X 를 조건 명제의 전건과 후건에 모두 위치시킴으로써 필연적 함축이 성립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러한 (7)을 자유론의 입장에서 부정할 있는 길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자유론의 입장에서 (7)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여전히 다음과 같은 명제가 성립할 수 있다.

$$(14) \quad \sim\square((DB\&C\&IN\&L)\rightarrow(L\&R_1\&R_2\&R_3\&X))$$

학이 가장 기초적인 입자로 간주하는 것들로 구성되는 가장 하위의, 토대적인, 밑바닥 단계의 실재가 있다고 가정한다. 모든 것은 그 가장 기초적인 입자들로 구성되는 것이다. ... 수반 결정론에서, 물리적인 것에 대한 정신적인 것의 수반은 성격상 비대칭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상위의 정신 속성들이 하위의 물리적 속성에 의존하고 그것에 의해 결정되지만, 하위의 물리적 속성은 상위의 정신적 속성에 의존하거나 그것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말이다.”[밑줄은 필자의 강조] Goetz(2000), pp. 167-8.

앞서 우리가 TSA와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했던 (6)과 마찬가지로 (14)도 ‘수정된 TSA’와 양립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와 마찬가지로 자유론의 입장에서는 바로 (14)와 같은 명제를 통해 행위자의 자유를 해명하려 시도할 것이다. 물론 터너는 <도식2>가 참이라 할지라도 (14)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수정된 TSA’도 앞서 살펴보았던 TSA와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터너의 입장에서는 (7)과 (8)을 통해 (9)를 정당화할 수 있다면, 이러한 문제점은 해결된다고 할 수 있다. 조금 전에 ‘에즈워드 언명’을 통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듯이, ‘수정된 TSA’에 포함되어 있는 MSA가 적절한 것일 경우 (14)의 후건에 포함되어 있는 비결정론적 사건은 행위자의 자유를 위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게 되는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제 자유론의 입장에서 남은 선택지는 (8)을 거부하는 것뿐이다. 만일 자유론의 입장에서 (8)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 (7)과 더불어 (9)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또한 미시거시 수반을 받아들이는 이상 (10)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11)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 행위자의 자유를 부정하는 논변을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제 우리의 물음은 이렇다. ‘결과논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8)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까? 결론부터 밝히면, 그렇지 않다. (8)을 다시 한 번 살펴보자.

(8) N(DB&C&IN&L&X)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DB, C, IN은 모두 행위자의 행위 r 의 시점에서 보았을 때 과거에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기술구들인 반면, X는 r 의 수반기초로서 r 과 동시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기술구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자유론의 입장에서 TSA의 두 번째

전제인 (4) $N(DB\&C\&IN\&L)$ 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상기해보자. 그것은 바로 법칙 고정성 전제와 더불어 과거 고정성 전제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8)의 경우는 다르다. (8)에는 r 과 동시에 발생한 사건 x 에 대한 기술구 X 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논변’에서처럼 과거 고정성 전제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8)을 곧바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자유론의 입장에서 (8)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명제를 받아들여야 한다.

(15) NX

이 명제는 어느 누구도 미시 물리적 사건에 대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수정된 TSA’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제 즉, 어느 누구도 미시 물리적 사건에 대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전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결과논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러한 전제는 필요치 않았다는 점을 기억하자. 그렇다면, ‘결과논변’을 수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수정된 TSA’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결국 ‘수정된 TSA’는 TCL의 P1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터너는 자유론의 입장이 자연주의를 받아들이는 한, NX 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NX 를 부정하는 것은 거시적 차원의 행위자가 미시 물리적 사건 X 에 대해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NX 를 부정하는 것은 미시 물리적 사건의 변화와 독립적인 거시 사건이 존재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에 근거하면, NX 를 부정하는 것은 미시거시 수반을 부정하면서 자연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생각에는

암묵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것이 있다. 그 전제는 바로 어떤 거시 사건과 그것의 수반기초가 되는 미시 사건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양자를 동일시할 수 있다면, 미시거시 수반을 부정하지 않고서도 NX를 부정할 수 있게 된다. 왜 그런지 생각해 보자.

앞서 논의한 것처럼, 자유론의 입장은 어떤 선택이나 결단이 앞선 사건들에 의해 결정론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통해 행위자의 자유를 확보하려 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결정론을 수용함으로써 NR을 거부하는 태도를 취한다. 이러한 자유론의 입장과 관련하여 ‘수정된 TSA’나 MSA는 NR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NX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담고 있는 논변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미시거시 수반을 부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말이다. 이러한 논쟁적 상황에서 거시 사건 r 과 그것의 수반기초가 되는 미시 사건 $r_1 \& r_2 \& r_3 \& x$ 가 동일한 것이라면, ‘수정된 TSA’나 MSA의 이러한 요구사항은 자동적으로 충족된다. NR의 부정과 $N(R_1 \& R_2 \& R_3 \& X)$ 의 부정은 동일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애초에 자유론의 입장에서는 비결정론을 통해 NR을 부정했었다는 것을 기억하자. NR과 $N(R_1 \& R_2 \& R_3 \& X)$ 이 동일한 사건에 관한 기술구라면, NR의 부정은 곧 $N(R_1 \& R_2 \& R_3 \& X)$ 의 부정이다. 여기서 미시거시 수반을 부정하는 요인은 끼어들 틈이 없다.

이러한 사항은 결단이나 선택과 같은 정신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만일 특정 시각에 발생하는 거시적 차원의 정신사건(예를 들어, m)과 그것의 수반기초인 미시 물리적 사건(예를 들어, $e_1 \& \dots \& e_3$)이 동일하다면, $N(E_1 \& \dots \& E_3)$ 를 부정하는 것은 NM을 부정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시거시 수반을 부정하는, 그래서 자연주의에서 벗어나는 요소를 끌어들이지 않고서도 $N(E_1 \& \dots \& E_3)$ 를 부정할 수 있다. 이처럼 어

편 거시 사건과 그것의 수반기초가 되는 미시 사건을 동일시할 수 있다면, 자유론의 입장에서도 ‘수정된 TSA’나 MSA에 대응할 수 있다. 미시거시 수반을 부정함으로써 자연주의에서 벗어나지 않고도 말이다. 결국 TCL의 P4를 부정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즉, TSA를 거부하더라도 자연주의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²⁴⁾

사실상 터너의 ‘수정된 TSA’에 핵심적인 부분은 (9), (10), (11) 즉 MSA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NX는 MSA의 (9) $N(L \& R_1 \& R_2 \& R_3 \& X)$ 에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NX는 MSA의 건전성과 관련해서도 논란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방금 논의했듯이, 자연주의 틀 안에서 NX를 거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수정된 TSA’에 새로운 것이 있다면, MSA의 (9)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는 (7)과 (8)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7)과 (8)은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24) 이런 방식의 대응은 정신사건과 물리사건에 대한 환원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김재권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동일시를 통해서 정신인과 문제를 해명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원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동일시는 정신인과의 문제를 해결해줄 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자유에 대한 수반의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터너는 이러한 대응 방식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그가 제시하는 유일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뉴런들은 두뇌의 가장 작은 계산적 단위를 구성한다. 그래서 뉴런 사건은 최소의 계산적 두뇌 사건을 구성해야만 한다. 그러나 두뇌의 최소 계산 단위보다 더 작은 사건과 정신사건을 동일시하는 것은 정말 무리일 것이다. 뉴런들은 두뇌의 최소 계산 단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시물리 사건은 더 작기 때문에, 미시물리 사건을 행위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정신적 종류로 생각하는 것도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터너의 생각은 너무도 단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신사건이나 행위와 동일시되는 것은, 터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작은 하나의 혹은 몇몇의 미시물리 입자들의 움직임이 아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거시적인 차원의 사건은 그러한 미시물리 입자들로 이루어진 복잡한 구조와 동일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정된 TSA’에서 NX가 가지는 중요성을 염두에 둔다면, 터너는 NX에 대해 적극적으로 옹호할 필요가 있다. Kim(1998), Kim(2005) 및 Turner(2009), pp. 580-1 참조.

MSA에서 논란의 대상되는 NX가 (8)에 단순히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수정된 TSA’는 선결문제요구의 오류도 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터너가 NX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설득력 있게 보이지 않는 한, 자유론에 대한 터너의 공격은 실패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5. 결론

이제 지금까지의 논의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 우리는 자유론과 자연주의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보여주려 한 터너의 논의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그 새로운 방식의 핵심적 명제는 자유론의 입장에서 ‘결과논변’을 수용할 경우 미시 거시 수반에 기초한 TSA 또는 ‘수정된 TSA’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P1)과, TSA 또는 ‘수정된 TSA’를 받아들일 경우 행위자의 자유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P2)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 자유론의 입장에서 TSA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행위자의 자유를 부정하는 데로 나아갈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다 (P2에 대한 부정). 그 핵심적인 이유는 TSA는 비결정론적인 사건이 행위자의 자유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또한 ‘결과논변’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수정된 TSA’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다(P1에 대한 부정). ‘수정된 TSA’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결과논변’의 건전성 여부는 상관없는 새로운 전제가 요구되는데, 자연주의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그 전제를 부정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논의가 적절한 것일 경우, 자유론의 입장에 대한 터너의 비판은 실패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참고문헌

- Fischer, J. M.(1994), *The Metaphysics of Free Will*(Blackwell).
- Goetz, S.(2000), "Naturalism and libertarian agency", in ed. W. L. Craig and J. P. Moreland, *Naturalism: A critical analysis*(Routledge, 2000), pp. 156-86.
- Kane, R.(1996), *The Significance of Free Will*(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1999), "Responsibility, Luck, and Chance: Reflections on Free Will and Indeterminism", *Journal of Philosophy*, pp. 217-40.
- _____ ed. (2002), *Free Will*(Blackwell).
- Kim, J.(1998), *Mind in a Physical World*(Cambridge, MA: MIT Press), 하종호 옮김, 『물리계 안에서의 마음』(철학과현실사, 1999).
- _____ (2005), *Physicalism, or Something near enough*(Princeton University Press), 하종호 옮김, 『물리주의』(아카넷, 2007).
- Merricks, T.(2001), *Objects and Persons*(Clarendon Press).
- O'Connor, T.(2000), *Persons and Causes: The Metaphysics of Free Will*(Oxford University Press).
- Turner, J.(2009), "The Incompatibility of Free Will and Naturalism", *Australasian Journal of Philosophy* Vol. 87, No. 4, pp. 565-87.
- van Inwagen, P.(1983), *An Essay on Free Will*(Clarendon Press).
- _____ (1995), "When is the Will Free?", in ed. T. O'Connor, *Agents, Causes, and Event*(Oxford University Press,

1995).

Warfield, T.(1999), “Donald Davidson's Freedom”, ed. M. De
Care, *Interpretations and Causes*(Kluwer, 1999). pp.
95-100.

행정안전부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E-mail: jihohong@korea.kr

The Consequence Argument and the Supervenience Argument

Jiho Hong

In this paper, I explore Turner's argument against libertarianism. He claims that libertarians can't be compatible with naturalism, without abandoning the Consequence Argument. In order to support this claim, he proposes the Supervenience Argument. According to him, the Supervenience Argument can't be rejected without abandoning either the Consequence Argument or naturalism. But I show that libertarians don't have to accept his Supervenience Argument, even though they stick to the Consequence Argument, and that even though they accept his Supervenience Argument, they don't have to abandon the freedom of agent. For these reasons, I conclude that Turner's argument against libertarianism turns out a failure.

Key words: libertarianism, naturalism, the Consequence Argument, supervenience, the Supervenience Argument, J. Turner